

산학협동 교육·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이하 '갑'이라 함)와 대구대학교(이하 '을'이라 함) 간에 산학협동 교육·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갑'과 '을'간의 산학협동으로 교육·연구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업무의 분담) '갑'의 업무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을'의 업무는 대구대학교 화학과와 화학교육과의 관련교수가 분담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4조 (협약내용) 본 협약은 산학협동 교육·연구개발이 그 대상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동 교육·연구개발을 위한 인적 교류
2. 현장실습을 위한 장소 및 기기 사용 편의 제공
3. 석유품질 향상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개발
4. 실험기기의 공동 활용
5. 기타

제5조 (인적교류) 현장실습에 필요로 하는 교수는 겸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겸임교수의 자격, 강사료, 강의담당시간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대금지불)

1.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의 사용은 실비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석유품질 향상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는 그 의뢰자가 부담한다.

제7조 (경비청구) 경비청구는 경비지불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8조 (협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해서 본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해지)

1. '갑'과 '을'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협약기간이라도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협약해지 사유를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때는 이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①협약의 이행을 게을리 할 경우
- ②'갑'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협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수 없
을 경우
- ③협약의 수행결과가 부실하거나 협약에 명기된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10조 (결과외 보안)

- 1. 연구수행에서 얻은 결과는 쌍방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 양도, 또
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이행에 따라 개발된 내용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기술이 본 협약을 통해 개발된 기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

- 1. 쌍방간에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수행 1개월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2. 사업계획서는 의뢰한 쪽 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
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3. 사업에 대한 계약의 조건은 각 사업마다 계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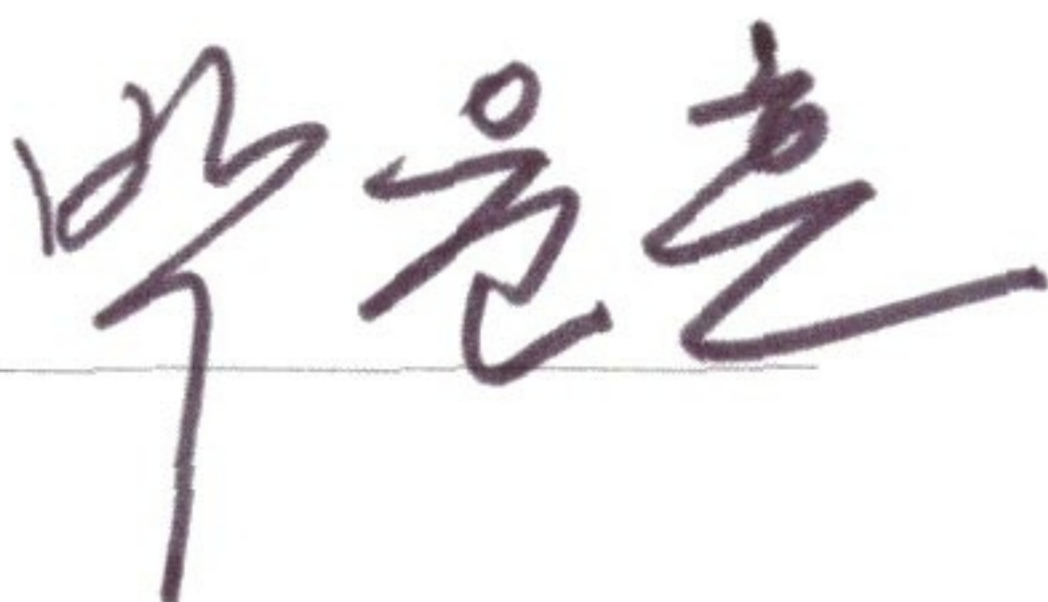
제12조 (개발 잉여금의 분배)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잉여금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분배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
른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7. 6. 19.

대 구 대 학 교
총 장 박 윤 훈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장 김 홍 식

